

연봉제 전임교원 임용 등에 관한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호서대학교 교원인사 규정 제11조에 의거 연봉제 전임교원(이하 “연봉제 교원”이라 한다)에 대한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2011학년도 1학기부터 신규 임용되는 연봉제 교원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제3조(계약기간)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게 될 경우, 만기일로부터 1개월 전에 이를 통보한다. 임용권자나 연봉제 교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재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만기일 2개월 전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만료토록 한다.

제4조(임용계약) ① 임용계약은 개인별로 체결한다.

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며, 다음 사항을 명기한다.

1. 계약기간
2. 임용직급(연봉금액)
3. 계약조건
4.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업적평가 및 연봉계약) 연봉제 교원은 매년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교원의 교육, 연구, 산학협력 및 봉사영역 등의 업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에 기초하여 연봉을 계약하며, 세부 평가 방식은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17. 9. 1)

제7조(급여) 연봉제 교원에 대한 급여는 교원급여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보수 및 성과급 등을 합하여 본교의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한다.

제8조(근무조건) 연봉제 교원은 교원 책임강의시간 내규에 의거하여 수업을 담당하며 연구실 등을 배정 받는다.

제9조(의원사직 및 면직) ① 연봉제 교원은 계약기간 중 개인적 사정에 의하더라도 학기 중에는 사직할 수 없다. 단,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강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정신적, 신체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② 연봉제 교원에게 계약기간 중 관계 규정에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원이 계약사항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.

제10조(계약조건변경) 계약변경 사유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1조(비밀유지) 연봉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2조(준용)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연봉제 전임교원도 이 규칙에 의하여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